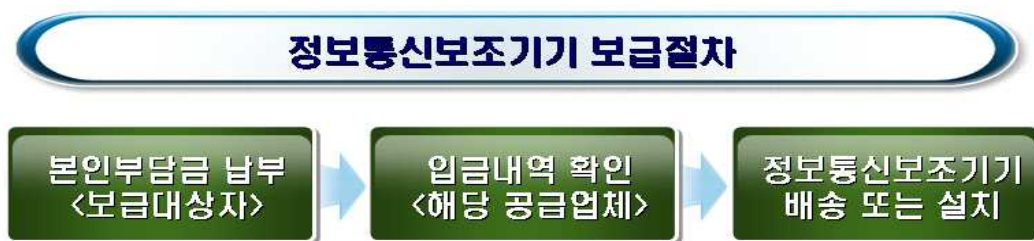


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안내문

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아래 안내사항을 확인하여 보조기기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보급절차와 방법

1) 보급절차



구 분	내 용	기 간
선 정 결 과 발 표	- 보급대상자 선정여부 확인	7. 16.(목)
개인부담금 납부	- 보급대상자는 해당기간 내에 개인부담금을 업체별 지정계좌에 납부	7. 20.(월)~7. 31.(금)
입 금 내 역 확 인 <납 품 사 업 자 >	- 개인부담금 납부내역 확인	7. 20.(월)~7. 31.(금)
배 송 과 설 치	- 해당 공급업체에서 배송과 설치	개인부담금 납부 후

※ 보급대상자는 굵은 색으로 표시된 안쪽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개인부담금 납부사실 확인 후 빠른 시일 내로 배송·설치할 계획이며 외산제품의 경우 수입절차 등 제품사정에 따라 배송·설치예정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

2) 보급방법

- 보급대상자는 본인 선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기간 내에 신청기기 보급 업체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.
- 본인부담금 납부
 - 납부기간 : 2026. 7. 20.(월) ~ 7. 31(금)
 - 계좌번호 : 붙임자료 참조

□ 보급대상자 유의사항

- 보급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후 납부기간에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급대상에서 제외함.
 - 보조기기 수령 후 반품 혹은 취소는 제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
 - 단, 보급 대상자 귀책사유로 제품이 멸실·훼손된 경우 또는 제품을 사용하여 상품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반품 불가
 - 소프트웨어(S/W)의 경우 제품 포장을 개봉한 경우 반품 불가
 - 무상A/S 기간은 1년(일부제품 2년)이며 기타 품질보증과 사용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 또는 납품사(제조사) 규정을 따름
 - 보급 받은 제품은 반드시 본인이 사용해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는 절대 불가함(발견 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급제품 회수 조치하고 향후 보급대상에서 제외, 매년 사용여부 실태조사 실시)
- ※ 위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보급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며, 지원한 보조기기는 회수하고, 추후 동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입금 시 유의사항

- 개인부담금 입금자(송금자)란에는 반드시 '지역-보급대상자이름'으로 납부해야 합니다. ※ 예시) 부산-홍길동
- 지역을 기재하지 않거나 신청인 이름과 상이한 이름으로 입금 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여 보급추진이 어렵습니다.
- 개인부담금액은 '일반'과 '저소득자'가 다르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금액을 정확히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
- 개인부담금 입금 후 납품업체에 연락하여 납부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배송 관련 사항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○ 보조기기 수령확인서 제출

- 개인부담금을 납부 완료하신 분에게 해당제품 납품업체에서 택배로 배송하거나 일부 보조기기의 경우 방문설치 합니다.
※ 자세한 배송과 설치 일정은 해당제품 납품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보조기기 수령 시 외부 이상 여부, 작동상태, 구성품목, 세부사양 등을 자세히 살펴보신 후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
문제 발생 시 즉시 해당제품 납품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제품을 수령하시면 해당제품 납품업체 직원의 안내에 따라 '수령확인서' (방문설치 제품)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※ 수령확인서는 <붙임 1>을 참고하시고 납품업체 안내를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※ 수령확인서는 해당 보조기기와 구성품을 이상 없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니 꼼꼼히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선정포기와 보급제품 반품 요령

- 보조기기 수령 전, 후에 단순변심 또는 제품에 대한 불만족 등의 사유로 선정포기, 반품 후 개인부담금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주시기 바라며, 세부절차는 <붙임 3>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개인부담금 미납자> 추가서류 작성 없이 자동 취소

<개인부담금 납부 후 보조기기 수령 전>

- 취소요청서 작성제출 → 개인부담금 환급

<개인부담금 납부와 보조기기 수령 후>

- 취소요청서 작성제출 → 보조기기 반납 → 개인부담금 환급

※ 단, 취소는 보조기기 수령일(수령확인서 작성일)로부터 15일 이내만 가능

○ 취소와 반품 불가사유

- 보급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제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, 제품 사용에 따른 상품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.
- 제품포장을 개봉한 소프트웨어(S/W)는 반품이 안되므로 개봉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붙임 1>

정보통신보조기기 수령 확인서			관리번호	
※ 이 부분은 정보통신보조기기 <u>납품업체에서 작성</u> 하시기 바랍니다.				
□ 배송·보급처(수령대상자) 현황				
성 명 (수령대상자)	배송·보급처(수령자 주소)	연락처	배송 예정일 안내	
			안내를 한 날짜 (월/일/시)	안내를 받은 자 (성명/수령대상자와의 관계)
□ 배송·보급내역				
납품업체명	제품명/모델명	세부사양 및 구성품목(상세히 작성)		
※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수혜자(본인, 대리인)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				
위의 배송내역에 기재된 제품을 이상없이 수령하신 경우 아래 설문내용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				
□ 정보통신보조기기 배송 관련 질의/응답(답변란에 ☑ 표시)				
문항	설문내용		답변	
1	제품 배송 예정일자를 미리 전화연락 받으셨습니까?		☐ 그렇다	☐ 아니다
2	장애유형에 적합한 “사용설명서”를 받으셨습니까?		☐ 그렇다	☐ 아니다
3	제품 전원 및 주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 합니까?		☐ 그렇다	☐ 아니다
4	제품사양 및 구성품목을 확인하였으며 모두 이상이 없습니까?		☐ 그렇다	☐ 아니다
5	정부지원 안내 및 A/S관련 안내 스티커 등이 부착되어 있습니까?		☐ 그렇다	☐ 아니다
6	제품 배송과 관련된 서비스(배송 예정일자 준수, 배송 직원의 친절도 등)에 만족 하십니까?		☐ 그렇다	☐ 아니다
위와 같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.				
제품을 받은(수령한) 날짜 : 2026 년 월 일				
제품을 받은(수령한) 사람 : (서명)				
※ ‘제품을 받은(수령한) 사람’ 란에는 보급대상자 성명을 기재				

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결정 취소 및 반품 절차

개인부담금 미납자	개인부담금 납부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보조기기를 <u>미수령</u> 한 경우	보조기기를 <u>수령</u> 한 경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납부기한 이내에 개인부담금 미납시 보급결정 취소	<table><tr><th>대 상</th><th>내 용</th></tr><tr><td>수혜자</td><td>"취소요청서" 작성 및 제출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↓</td></tr><tr><td>운영 기관</td><td>"취소요청서" 접수 및 해당업체 통보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↓</td></tr><tr><td>해당 업체</td><td>- 개인부담금 환불 ※ 환불기한 : 취소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- 개인부담금 환불완료 보고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↓</td></tr><tr><td>운영 기관</td><td>취소처리완료</td></tr></table>	대 상	내 용	수혜자	"취소요청서" 작성 및 제출	↓		운영 기관	"취소요청서" 접수 및 해당업체 통보	↓		해당 업체	- 개인부담금 환불 ※ 환불기한 : 취소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- 개인부담금 환불완료 보고	↓		운영 기관	취소처리완료	<table><tr><th>대 상</th><th>내 용</th></tr><tr><td>수혜자</td><td>"취소요청서" 작성 및 제출 ※ 반품기한 : 기기 수령일로 부터 15일 이내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↓</td></tr><tr><td>운영 기관</td><td>"취소요청서" 접수 및 해당업체 통보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↓</td></tr><tr><td>해당 업체</td><td>- 보조기기 회수 - 개인부담금 환불 ※ 환불기한 : 기기 회수일로부터 7일 이내 - 개인부담금 환불완료 보고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↓</td></tr><tr><td>운영 기관</td><td>취소처리 완료</td></tr></table>	대 상	내 용	수혜자	"취소요청서" 작성 및 제출 ※ 반품기한 : 기기 수령일로 부터 15일 이내	↓		운영 기관	"취소요청서" 접수 및 해당업체 통보	↓		해당 업체	- 보조기기 회수 - 개인부담금 환불 ※ 환불기한 : 기기 회수일로부터 7일 이내 - 개인부담금 환불완료 보고	↓		운영 기관	취소처리 완료
	대 상	내 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수혜자	"취소요청서" 작성 및 제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↓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운영 기관	"취소요청서" 접수 및 해당업체 통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↓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해당 업체	- 개인부담금 환불 ※ 환불기한 : 취소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- 개인부담금 환불완료 보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↓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운영 기관	취소처리완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 상	내 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혜자	"취소요청서" 작성 및 제출 ※ 반품기한 : 기기 수령일로 부터 15일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↓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운영 기관	"취소요청서" 접수 및 해당업체 통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↓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해당 업체	- 보조기기 회수 - 개인부담금 환불 ※ 환불기한 : 기기 회수일로부터 7일 이내 - 개인부담금 환불완료 보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↓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운영 기관	취소처리 완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※ 개인부담금 납부 후 30일 이내에 연락이 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·배송을 거부하는 경우, 보급결정 취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※ 취소신청시 반드시 부산광역시 정보화정책과(☎888-2357)로 문의바랍니다.